

충청북도자연학습원조례중개정조례 (안)

의안 번호	123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6. . . .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제안이유

- 조직개편으로 충청북도자연학습원의 소속이 변경됨에 따라
- 운영 위원중 내무국장을 보건환경국장으로하고 동위원회 간사 국민운동지원과장을 환경관리과장으로 변경하며
- '90. 3. 23 조정후 동결한 자연학습원의 시설사용료 징수 기준액을 전국평균 수준으로 상향 조정코자함.

주요골자

- 제6조3항 : 운영위원 내무국장 → 보건환경국장
- 제6조4항 : 간사 국민운동지원과장 → 환경관리과장
- 제9조 (별표:시설사용료) : 전국평균수준으로 상향 조정

의안전문 : 별첨

신.구조문대비표 : 별첨

관계법령발췌 : 해당없음

사전협의및 승인신청 결과 : 해당없음

입법에고결과 : 별첨

충청북도자연학습원조례중개정조례 (안)

충청북도자연학습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6조제3호중 "내무국장"을 "보건환경국장"으로 한다

제6조제4호중 "국민운동지원과장"을 "환경관리과장"으로 한다

제9조중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

부 칙

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9조중 별표 시설물사용료는 1996. 7. 1부터 적용한다.